





# 충청북도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만족

책임연구 | 노필순(충북대학교 외래교수)

공동연구 | 오정아(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 김평화(충남복지재단 주임연구원)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충청북도사회복지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제 출 문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북도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만족』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연구자 : 노필순

(충북대학교 외래교수)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문제 .....	6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	7

## II. 충청북도 청소년 현황

---

1. 충청북도 청소년 일반현황 .....	11
2. 충청북도 청소년 정신건강 .....	20
3. 충청북도 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 .....	22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33
2. 변수 .....	35
3. 분석방법 .....	40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	43
2.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 .....	44
3.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생활경험 .....	46
4. 청소년의 인권 관련 정보 인지도 .....	51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61
2. 제언 .....	65

참고문헌 ..... 71

부록 ..... 72

# 표 목 차

<표 I-1> 연구의 수행 절차 .....	8
<표 II-1> 주민등록 인구 .....	11
<표 II-2> 2019년 연령별 청소년 인구 .....	12
<표 II-3> 충북 시군별 청소년 인구 .....	13
<표 II-4> 충북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15
<표 II-5>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	17
<표 II-6>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	81
<표 II-7>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	19
<표 II-8>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구성 내용 .....	23
<표 II-9> 유엔아동권리협약 각 영역 .....	24
<표 II-10> 청소년의 권리 .....	25
<표 II-1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26
<표 II-12>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현장 실천규약 .....	28
<표 III-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	34
<표 III-2> 연구에 활용된 변수 .....	35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43
<표 IV-2>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 .....	45
<표 IV-3>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문화 및 학교생활만족도 .....	48
<표 IV-4>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 교육목표 인식 정도 .....	50
<표 IV-5> 학교급별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도 .....	52
<표 IV-6> 학교급별 학생인권조례 인지도 .....	53
<표 IV-7> 학교급별 국가인권위원회 인지도 .....	54
<표 IV-8> 학교급별 청소년용 정책홍보 및 정보 제공 .....	55
<표 IV-9> 학교급별 유엔아동권리 협약 내용 등 정보제공 .....	56
<표 IV-10> 학교급별 인권침해관련 정보 제공 .....	57

# | 그 림 목 차 |

[그림 I-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7
[그림 II-1] 충북 청소년 인구 전망 .....	14
[그림 II-2]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	14
[그림 II-3] 시·도별 보호대상 아동 수 .....	16
[그림 II-4] 충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20
[그림 II-5] 충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21
[그림 II-6]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현장 구성 내용 .....	29
[그림 V-1]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	65
[그림 V-2]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 기능 .....	67
[그림 V-3]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 교육기능 .....	68
[그림 V-4]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 상담 기능 .....	68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3. 연구수행 절차



# I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 아동인권 보호와 아동권리선언

○ 인권은 개인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기본적 권리로 타인이 함부로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는 개인 고유의 권리로 이해될 수 있음. 인권은 모든 개인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지만, 아동에게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예외로 적용되었음. 오랜 기간 아동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미흡한 존재로 간주되거나,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이는 아동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로 본 것임(Campbell, 1992)

○ 이러한 시류는 제1대 세계대전 이후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변화하게 됨. Eglantyne Jebb(1923)이 아동권리와 보호에 관한 5가지 원칙을 규정한 아동권리선언문을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작성했고, 이 후 국제연맹이 이를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으로 채택하면서 아동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아젠다(agenda)가 형성됨.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은 오랜 기간 한 개인으로 주체성 및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성인의 축소물로 취급되어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던 아동이 한 인간으로 오롯이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짐

#### □ 한국사회 청소년 인권과 권리 보호

○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인권과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향되고 있지만, 아직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인권이나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음. 물론, 청소년 인권조례를 채택한 지자체가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이고 이에 대한 찬반논쟁은 여전히 존재함.

학계에서는 한국사회 청소년이 교사나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하고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보고 있음(성정숙, 1999)

- 청소년기 인권에 대한 인식은 타인에 대한 존엄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곧 학교 내 또래관계를 비롯하여 교사와의 관계, 성인기 대인 관계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이에 청소년기 인권교육은 청소년 개인에 대한 인권의식함양 및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선양되어야 함

#### □ 충북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 충북지역 인권실태를 조사한 최승호 등(2016)에 따르면 지역 학계 및 현장 전문가 44.8%가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았고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전문가 47.6%, 충북도민 82.5%가 모른다는 응답이 높다고 보고하였음. 이렇듯 지역의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다는 것은 충북도 조례제정 이후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낮은 인권의식은 자신을 비롯하여 타인의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 수준에도 영향을 주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됨
- 또한 최승호 등(2016)의 조사에서는 학교 내 체벌금지 등과 관련된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되어서 충북도민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과반 수 이상이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됨. 이는 부모에 의해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에서 문제해결 수단으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데 이는 폭력을 선택했을 때 보다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승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Foshee, Bauman, & Linder, 1999).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차원에서 행해지는 훈육적 체벌도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됨
- 하지만 이 연구는 충북도민과 전문가의 인권의식을 살펴본 지역 전반적인 인권실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학교 내에서 교

사에 의한 학생 인권보호측면을 살펴보았을 뿐 학생간 관계에서 낮은 인권의식에 따른 폭력,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음

- 인권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의식 수준은 자신에 대한 존중을 비롯하여 또래집단에서의 관계에 깊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학교폭력 행태가 성인의 폭력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연령도 더욱 낮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봄. 청소년기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성인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의식 수준을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생태체계 환경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인권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김무겸(2004)과 정지석(2012)은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학교생활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하였고, 박병금과 유은선(2011), 이지현(2017)은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친사회적 행동간 관계성을 살펴보았음. 이 외에도 인권의식이 장애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장지원(2015)의 연구는 인권의식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에서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존중까지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줌.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인권의식과 폭력, 학교생활, 장애인 및 다문화 등에 대한 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뿐 개인의 인권의식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이나 학교생활 만족은 탐색하지 못하였음
- 청소년 폭력이나 문제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존엄의식이 낮을수록 학교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우울이나 정서적 불안 등의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 있음. 이를 근거로 볼 때, 인권의식은 개인의 정서적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생활에도 깊이 관여한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함.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이에 따른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한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원만한 학

교생활 적응을 위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봄

##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이에 따른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만족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 및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2. 연구문제

### 이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 제공의 경로는 어떠한가?
-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따라 정신건강(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행복감, 삶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가?
-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따라 학교생활(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2) 연구 수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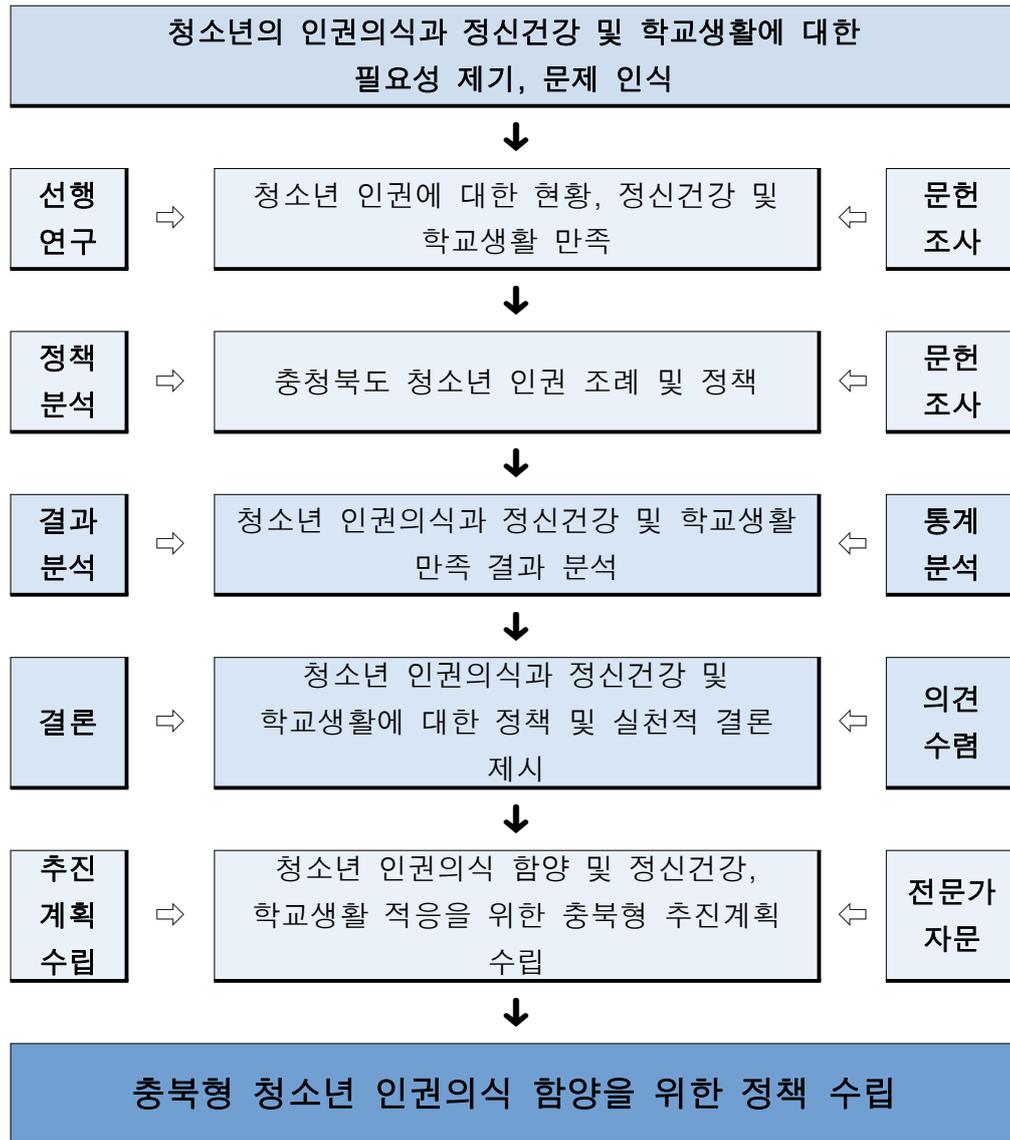
□ 문헌 및 정책관련 자료 조사

- 통계청(KOSIS) 자료, 지역의 행정기획 및 정책계획 관련자료, 청소년 현황 관련 행정자료, 청소년 정책 관련자료 수집분석

### 3) 연구의 수행 절차

#### (1) 연구의 수행 절차

<표 1-1> 연구의 수행 절차



## Ⅱ. 충청북도 청소년 현황

1. 충청북도 청소년 일반 현황
2. 충청북도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
3. 충청북도 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



## II | 충청북도 청소년 현황

### 1. 충청북도 청소년 일반현황

- 본 장에서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와 교육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행정통계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청소년(10세~19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정책환경을 분석하였음

#### (1) 충북 인구

- 주민등록인구를 살펴보면 충북 전체 인구는 1,599,651명이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839,651명), 가장 적은 지역은 단양군(29,816명)으로 나타남

<표 II-1> 주민등록 인구

(단위: 명)

구분	총인구수	남자인구수	여자인구수
전체	1,599,651	810,187	789,464
청주시	839,615	422,902	416,713
충주시	210,826	106,598	104,228
제천시	134,768	67,548	67,220
보은군	33,008	16,541	16,467
옥천군	51,034	25,723	25,311
영동군	48,877	24,254	24,623
증평군	37,419	19,357	18,062
진천군	80,962	42,318	38,644
괴산군	38,312	19,601	18,711
음성군	95,014	50,262	44,752
단양군	29,816	15,083	14,733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안전부, 「2019년 주민등록인구 현황」

## (2) 충북 청소년 인구 현황

- 2019년 현재 10~19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155천 명으로 충북 총 인구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남자청소년은 80,738명, 여자청소년은 74,098명으로 성비는 109.0이었음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세가 12.8%로 가장 많았고, 18세(11.6%), 17세(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14세가 8.8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연령별 비율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II -2〉 2019년 연령별 청소년 인구

(단위: 명)

	청소년 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성비
10세	14,019	9.1	7,273	6,746	107.8
11세	14,559	9.4	7,552	7,007	107.8
12세	15,406	10.0	8,017	7,389	108.5
13세	13,811	8.9	7,078	6,733	105.1
14세	13,690	8.8	7,104	6,586	107.9
15세	14,837	9.6	7,842	6,995	112.1
16세	15,051	9.7	7,902	7,149	110.5
17세	15,682	10.1	8,233	7,449	110.5
18세	18,016	11.6	9,370	8,646	108.4
19세	19,765	12.8	10,367	9,398	110.3
계	154,836	9.7	80,738	74,098	109.0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안전부, 「2019년 주민등록인구 현황」

- 충북 시·군별 청소년인구(10~19세)는 청주(88,674명), 충주(19,728명), 제천(12,379명), 음성(8,145명), 진천(7,924명)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청소년 인구 154,836명 중 약 57%가 넘는 수가 청주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시·군별 총 인구 대비 청소년인구(10~19세) 비율은 청주(10.6%), 진천(9.8%), 충주(9.4%), 증평(9.3%), 제천(9.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청소년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괴산(5.8%), 보은(6.8%), 단양(7.2%), 영동(7.6%) 순으로 나타남

〈표 II-3〉 충북 시군별 청소년 인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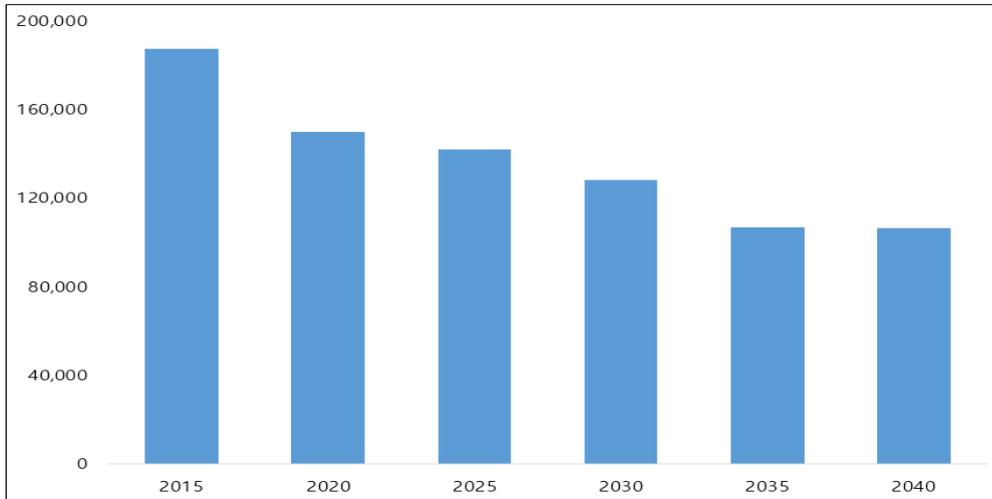
구분	총인구수	청소년인구	남	여	총 인구 대비 청소년인구
전체	1,599,651	154,836	80,738	74,098	9.7
청주시	839,615	88,674	46,220	42,454	10.6
충주시	210,826	19,728	10,318	9,410	9.4
제천시	134,768	12,379	6,398	5,981	9.2
보은군	33,008	2,251	1,193	1,058	6.8
옥천군	51,034	4,117	2,170	1,947	8.1
영동군	48,877	3,727	1,913	1,814	7.6
증평군	37,419	3,495	1,829	1,666	9.3
진천군	80,962	7,924	4,171	3,753	9.8
괴산군	38,312	2,238	1,164	1,074	5.8
음성군	95,014	8,145	4,235	3,910	8.6
단양군	29,816	2,158	1,127	1,031	7.2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안전부. 「2019년 주민등록인구 현황」

-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충북 청소년인구(10~19세)는 2015년 187,406명에서 2020년에는 149,660명, 2025년에는 141,759명, 2040년에는 106,195명으로 2015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II-1)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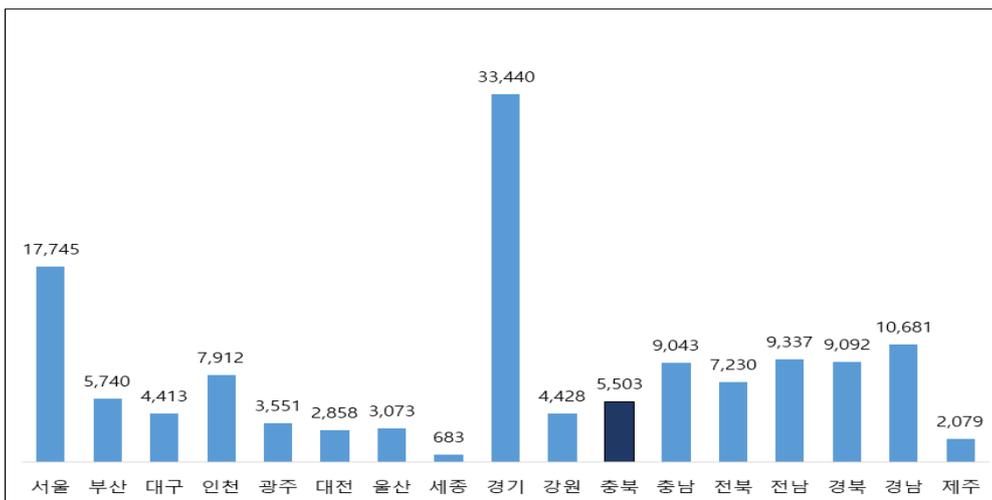
[그림 II-1] 충북 청소년 인구 전망

출처: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 (3) 다문화가정 자녀

- 시·도별 다문화가정의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어 서울, 경남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II-2]. 충북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약 5,500명 정도로 확인됨

(단위: 명)



[그림 II-2] 시·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 도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7년 4,434명에서 2019년 5,503명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 10.9%, 2018년 11.89%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2019년 현재 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은 초등학생이 4,1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학생 2,053명, 고등학생 430명으로 나타남

〈표 II-4〉 충북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단위: 명)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다문화가정(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b>2017</b>	3075	613	431	4119	242	57	16	315	3317	670	447	4434
<b>2018</b>	3397	633	436	4466	330	86	37	453	3727	719	473	4919
<b>2019</b>	3680	803	426	4909	430	115	49	594	4110	2053	430	5503

주1: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국내출생자와 중도입국자의 합

주2: 외국인가정 자녀는 부모가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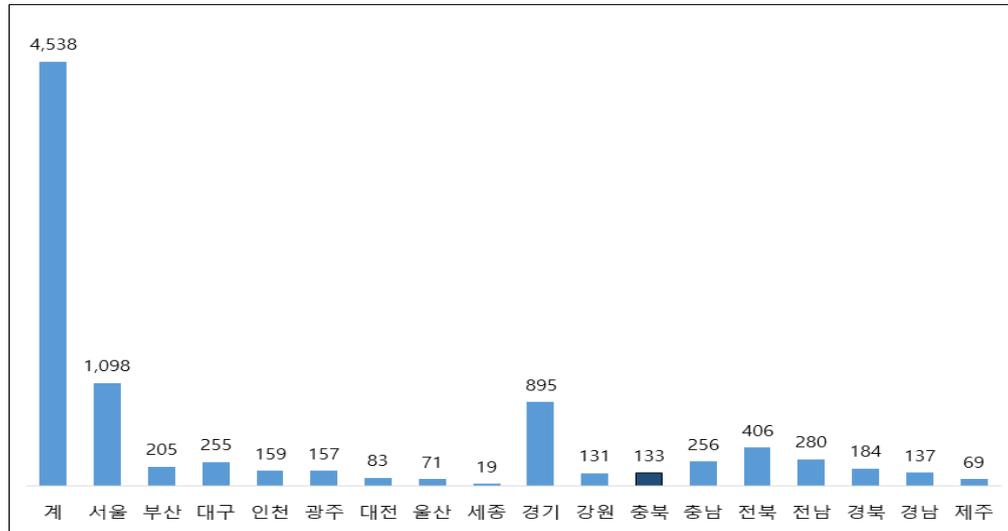
주3: 각종학교(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제외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각 년도.

#### (4) 보호대상아동 현황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 2018년에 발생한 전국 보호대상아동 수는 총 4,538명이었고, 충북에서 신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133명이며 이 중 7명이 귀가 및 연구자에 인도됨

(단위: 명)



[그림 II-3] 시·도별 보호대상 아동 수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각 년도.

- 연도별로 보호대상 아동 수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총 251건, 2017년에는 총 161건, 2018년에는 총 133건으로 충북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은 학대(56명), 부모 이혼 등(31명), 미혼모·부 아동(1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년 동안 미아로 인한 발생은 나타나지 않았음
- 학대로 인한 발생은 2016년 53건, 2017년 51건으로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다시 56건으로 다소 증가함. 각 연도별 총 발생 수 대비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부모 질병과 부모 사망, 부모 빈곤 및 실직에 의한 보호아동 발생 수는 2016년에 비하여 2018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행·가출·부랑에 따른 보호아동발생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 -5〉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명)

연도	총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									
			계	기아	미혼 부모 아동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2016	251	10	241	0	23	0	1	53	8	10	7	139
2017	161	21	140	8	28	0	0	51	14	6	3	30
2018	133	7	126	7	15	0	6	56	1	8	2	31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각 년도.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형태는 크게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로 구분되며, 시설보호에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있고, 가정보호에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보호가 있음
- 2018년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입소 중에는 양육시설 입소가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었음.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된 경우 2018년 38명으로 2017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 과거에는 소년소녀가정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보호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존재하였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충북 역시 0명으로 집계됨
- 원가정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대안양육을 권장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충북 역시 가정보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가정위탁의 경우 가정보호형태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 -6〉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단위: 명/2018년 12월 기준)

연도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 전 위탁
2016	241	90	49	9	0	32	151	0	3	148	0
2017	140	104	53	0	0	51	36	0	6	30	0
2018	126	77	39	0	0	38	49	0	4	44	1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각 년도.

### (5) 학업중단현황

- 충북의 학생수는 2015년 192,224명에서 2019년 175,58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2016년 1,207명에서 2019년 1,330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북 청소년의 학업중단률 역시 2016년 0.6%에서 2019년 0.8%로 0.2%p 증가함
- 2019년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435명)이 가장 많았고, 질병이나 장기결석으로 면제(247명)나 유예(245명)인 경우가 그 뒤를 이음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와 퇴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7〉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명/ 2019년 8월기준)

연도	전년도 학생수	학업 중단률 (%)	학업 중단 자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기타		
2016	192,224	0.6	1,207	283	170	25	8	436	58	209	16	2
2017	185,276	0.7	1,312	249	211	32	9	432	61	299	16	3
2018	180,076	0.7	1,226	216	235	19	8	379	47	301	20	1
2019	175,582	0.8	1,330	245	247	31	9	435	55	281	25	2

출처: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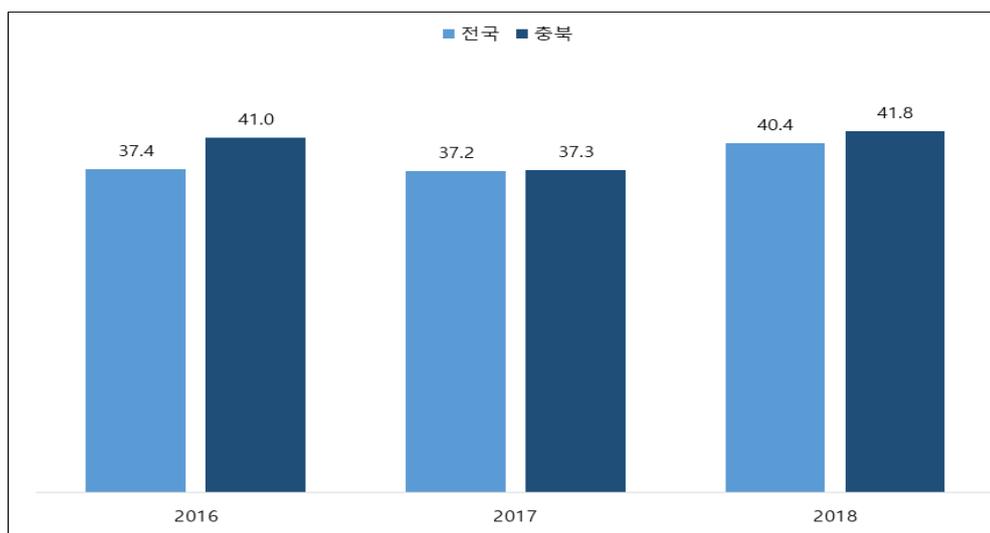
## 2. 충청북도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

- 본 장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제공하는 주요 통계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에 대해 분석함
- 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실시된 충북 모집단은 211개교, 89,295명이며, 표본 수는 31개교, 2,367명임
- 최종적으로 31개교 2367명이 조사에 참여함

### 1) 충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2018년 충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1.8%로 전국 40.4%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연도별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4.5%p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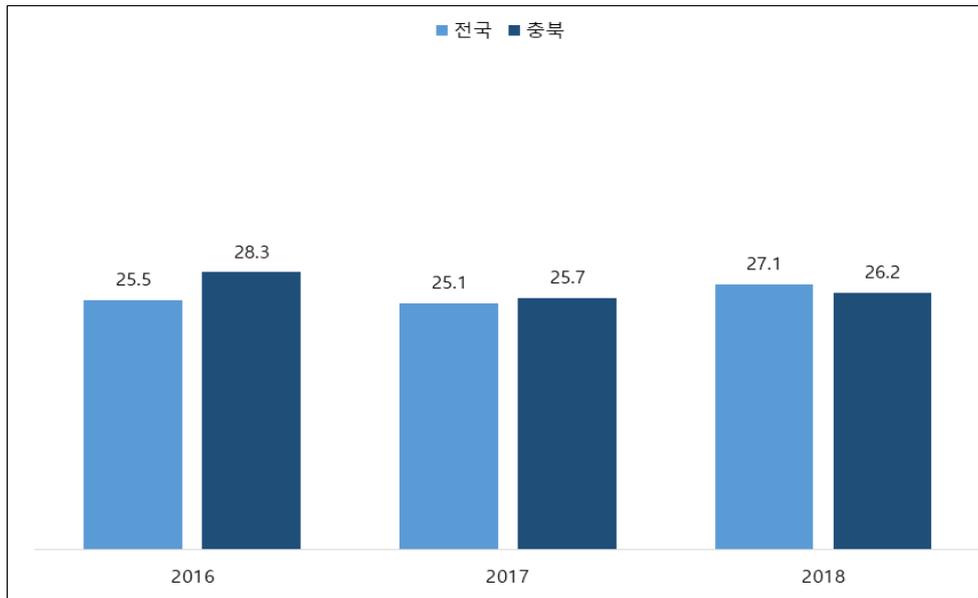
주: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8). 「제 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그림 II-4] 충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2) 충북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 2018년 충북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6.2%로 전국 27.1%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연도별로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우울감 경험률이 소폭 감소한 반면,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1.6%p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충북 학생 약 4명 중 1명 정도가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충북 청소년의 우울감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단위: 명)



주: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8). 「제 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그림 II-5] 충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3. 충청북도 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

#### 1) 청소년 인권

-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역시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음
-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라 정의되고 있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
-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자기결정의 주체’로서 가장 늦게 권리 주체로 등장함

#### 2) 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

##### (1) 세계인권선언

-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지는 존엄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아동·청소년관련 규정은 가정의 보호(제16조 3항), 모자의 보호(제25조 2항),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교육(제26조 1항) 등이 있음
-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나,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자기결정의 주체’로서 가장 늦게 권리 주체로 등장함

## (2) 유엔아동권리협약

-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 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담은 협약으로 전문과 7대 영역 54개 조항으로 구성됨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에서는 아동을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18세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며, 아동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함 없이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음

〈표 II-8〉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구성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제1부	제1조~제41조	아동의 실제적 권리내용과 아동보호의무 명시
제2부	제42조~제45조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당사국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
제3부	제46조~제54조	회원국의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 유보 등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6).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재 개발 연구.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규정하는 권리일반,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대 영역에 대해 주요사항을 권고하고 있음

〈표 II-9〉 유엔아동권리협약 각 영역

구분	조항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li> <li>-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li> <li>-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li> <li>- 아동의 의견 존중</li> </ul>
시민적 권리와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li> <li>-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li> <li>-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li> <li>-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li> </ul>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li> <li>-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li> <li>- 학교폭력</li> <li>-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철폐를 위한 국가전략 개발</li> </ul>
가정환경 및 대안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환경 및 부모의 책임, 부모 지원 및 아동돌봄 서비스</li> <li>-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정환경 상실 및 아동 지원</li> <li>- 아동 양육비 확보</li> <li>- 입양</li> <li>-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li> <li>-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li> </ul>
장애·기초보조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li> <li>- 생존 및 발달, 건강 및 보건서비스</li> <li>- 약물 남용 보호조치</li> <li>- 돌봄 서비스,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li> </ul>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받을 권리</li> <li>- 교육의 목적</li> <li>- 여가 및 문화활동</li> <li>- 원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권리</li> </ul>
특별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아동</li> <li>- 이주배경 아동</li> <li>- 탈가정 청소년 보호</li> <li>-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li> <li>-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li> <li>- 인신매매, 불법거래, 유괴</li> <li>- 소년사법 운영</li> <li>- 범죄 목격 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li> </ul>

출처: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2007).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 (3) 청소년헌장

- 청소년헌장은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표적 청소년 인권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청소년 현장은 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며 독립적 인격체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기본원리를 밝히고 있음
- 청소년현장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은 <표 II-5>와 같음

<표 II-10> 청소년의 권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li> <li>2.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li> <li>3.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li> <li>4.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li> <li>5.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li> <li>6.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li> <li>7.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li> <li>8.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li> <li>9.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li> <li>10.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li> <li>1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 할 권리를 가진다.</li> <li>12.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li> </ol>
--

출처: 청소년현장.

**(4) 학생인권조례**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된 조례로 2010년 경기도에서 첫 제정된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 등 4개 지역에서 공포해 시행 중임
-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31조」,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제 12, 13조,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에 근거하고 있음

- 인권의 범주 면에서 청소년헌장과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라는 환경에서 직면한 학생의 인권에 대해 다루고 있음
- 각 시도별로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10가지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권리 보장 뿐 아니라 교원과 보호자에 대한 학생 인권 교육 및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학생 참여위원회,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의 기구를 두어 학생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II-1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3.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
5.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6.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7. 복지에 관한 권리: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8.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9.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권리를 지킬 권리,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0. 소사자 학생의 권리 보장

### 3) 충청북도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

#### (1)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한 조례

- 충청북도는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2013년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4조에서는 ‘모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2)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 충청북도는 학생인권조례 대신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비전을 담아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및 실천규약」을 2016년 제정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서 ‘교육공동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주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통틀어 사용하는 개념임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모든 교육정책 수립 시 기본 생각으로 활용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제안서로 활용하며, 교육 2주체 생활협약 만들기 등 서로 조화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데 활용하고 있음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은 충청북도의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생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치활동을 보장받고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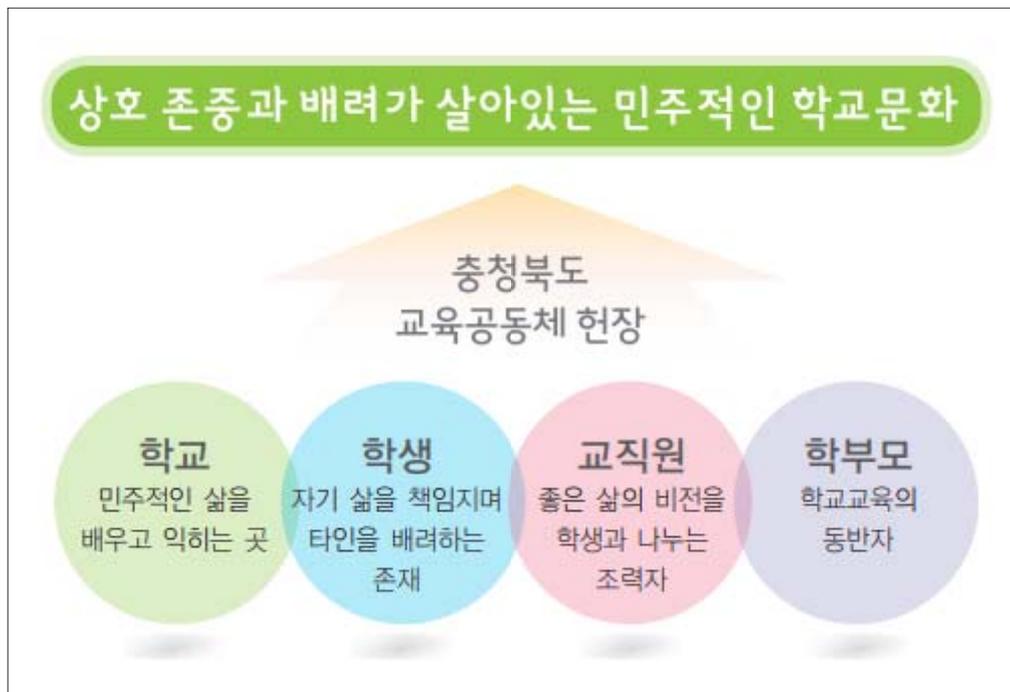
<표 II-12>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현장 실천규약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현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 제1조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
- 제2조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5조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제6조 학생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예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10조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 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학생은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학생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 1. 학생은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 학생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학생은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 4.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현장」은 학생과 더불어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역시 규정하고 있음
-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상담을 요청할 권리, 학교 운영 및 자녀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교권과 학습권의 보호에 힘쓸 책임을 동시에 명시하고 있음

- 교직원 역시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 교육활동에 관한 자율권을 가질 권리,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권리,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신분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있으며, 동시에 충실한 교육활동을 할 책임,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할 책임,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충청교육청은 구성원과 협의하여 교육공동체 현장의 의미를 2020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출처: 충청북도교육청(2019).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현장 리플릿.

[그림 II-6]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현장 구성 내용



###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변수
3. 분석방법



### Ⅲ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 가운데 충청북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함
  
- 주요 통계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2009년 6월 24일 : 통계청 승인통계 지정(제402001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② 2009년~2010년 : 전국조사(제주도 제외), 학교유형별 분석(초/중/고), 인권영역을 크게 4개로 구분하여 2개 영역씩 격년조사
  - ③ 2011년~2012년 : 전국조사(제주도 제외), 학교유형 구분(초/중/일반계고/전문계고), 인권영역 2개씩 격년조사
  - ④ 2013년~2016년 : 전국조사(제주도 포함), 학교유형 구분(초/중/일반계고/특성화계고), 매년 인권 전체 영역을 종합 조사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개발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 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전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인권영역별 실태를 조사함
  
- 이 연구에서는 2013년~2016년에 해당하는 데이터에서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중심으로 분석함
  
-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

학 중인 학생(2016년 기준)을 대상으로 함

- 지역은 다니는 학교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응답만을 활용하였는데, 전국 응답자는 11,132명이며 그 중 충청북도 소재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387명이었음
-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Ⅲ-1>과 같음
- 연구참여자는 387명으로 남학생 37%, 여학생 63%의 분포를 보였음 학교급은 초등학교 39.8%, 중학교 23.0%, 일반고 24.3%, 특성화고 12.9%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은 상 30.0%, 중 46.7%, 하 23.2%로 나타났음.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상 55.6%, 중 34.2%, 하 10.2%로 나타났음

<표 Ⅲ-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	%
성별	남학생	143	37
	여학생	244	63
	합계	387	100
학교급	초등학교	154	39.8
	중학교	89	23.0
	일반고	94	24.3
	특성화고	50	12.9
	합계	387	100.0
학업성적	상	115	30.0
	중	179	46.7
	하	89	23.2
	합계	383	100.0
경제적 수준	상	213	55.6
	중	131	34.2
	하	39	10.2
	합계	383	100.0

## 2. 변수

□ 활용된 변수와 설문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 III-2>와 같음

<표 III-2>연구에 활용된 변수

측정 변수	설문내용	응답범주	$\alpha$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가정 (2) 학교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4) 우리나라 전체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 ④ 매우 존중받는다	.861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2) 청소년도 사회문제가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706
인권교육경험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⑤ 5회	-
스트레스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2) 가정 불화 (3) 또래와 관계 (4) 경제적인 어려움 (5) 외모·신체조건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804
우울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이유없이 외로운 적 있다 (2) 이유없이 불안한 적 있다 (3) 이유없이 우울한 적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900

측정 변수	설문내용	응답범주	$\alpha$
자아 존중감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2)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역코딩) (4)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782
행복감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④ 매우 행복하다	-
삶의 수준	현재 자신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⑥ 낮은 삶의 수준 - ⑩ 높은 삶의 수준	-
학교 문화 및 학교생 활 만족도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3)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
학교 교육목 표에 대한 인식 정도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2)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3)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4)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다	-
인권 관련 협약이 나 기관 인지도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2) 학생인권조례 (3) 국가인권위원회	① 모른다 - ③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
인권 관련 정보 제공 정도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는 적이 있다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 1) 인권의식

### (1)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는 정도를 측정함. 가정, 학교, 지역, 나라 전체, 그리고 사이버 공간으로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부터 “매우 존중 받는다” 까지 1-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음. 신뢰도는  $\alpha=.861$  임

### (2) 인권 상황 의식

-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통해 청소년의 인권 상황 인식을 측정함.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등의 7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4)” 까지 응답하도록 함.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06$  임

### (3) 인권교육 경험

-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을 묻는 문항 1개를 활용함. “교육 받은 적 없음(0)” 부터 “5회 이상(5)” 까지 응답하도록 함

## 2) 정신건강

### (1) 스트레스

- 최근 1년 동안 인지한 스트레스 정도 측정하기 위하여 “학업 문제” 등의 6개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4)” 까지 응답하도록 함.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04$  임.

(2) 우울

- 청소년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등 3문항을 활용함.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4)” 까지 응답하도록 함.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900$  임

(3) 자아존중감

-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4개 항목을 활용함.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4)” 까지 응답하도록 함. 3번 항목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는 역채점하였음.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782$  임

(4) 행복감

-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함. 이 질문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1)” 부터 “매우 행복하다(4)” 까지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5) 삶의 수준

-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삶의 수준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함. 응답범주는 “낮은 삶의 수준(0)” 부터 “높은 삶의 수준(10)” 까지 응답하도록 함

### 3) 학교생활경험

(1)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 어떠한지 측정하기 위해 최근 1년의 경험을 묻

는 질문을 활용하였음.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등 4개의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4)” 까지 응답하도록 함. 각 항목별 응답을 활용함

(2)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 학교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청소년들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등 4개의 항목을 활용함.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 부터 “매우 그렇다(4)” 로 각 항목별 응답을 활용함

#### 4) 청소년의 인권 관련 정보 인지도

(1) 인권 협약 및 기관 인지도

-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등 3개 항목을 질문함. 응답범주는 “모른다(1)”, “이름만 들어봤다(2)”,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3)” 로 구성되어 있음

(2) 인권 관련 정보제공 정도

- 청소년과 관련된 인권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음.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다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등의 3개 항목으로 응답범주는 “아니다(1)” 과 “그렇다(2)” 로 구성되어 있음

### 3. 분석방법

-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2.0프로그램을 활용하였음.
- 주요변인들의 평균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변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s  $\alpha$ 를 산출함
- 또한 충청북도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과 학교생활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분석을 실시하였음
- 도내 청소년의 인권 협약과 기관 인지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인권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함

####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2.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
3.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생활경험
4. 청소년의 인권 관련 정보 인지도



## IV |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인권의식으로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인권 상황 인식, 인권 교육경험으로 3개 항목이며, 종속변수는 정신건강의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행복감, 삶의 수준으로 5개 항목과 학교생활경험의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2개 항목으로 총 7개 항목으로 주요 변인은 총 10개 항목임

<표 IV-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단위: 명, 점)

구분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독립 변수	인권 의식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387	1	4	3.16	0.58
		인권 상황인식	387	1	4	3.20	0.46
		인권 교육경험	386	0	5	1.77	1.76
종속 변수	정신 건강	스트레스	387	1	4	1.97	0.64
		우울	386	1	4	1.97	0.91
		자아존중감	387	1	4	3.03	0.63
		행복감	384	1	4	3.15	0.70
		삶의 수준	384	0	10	7.00	2.10
	학교 생활 경험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387	1	4	3.18	0.55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387	1	4	3.09	0.61

주: N=387

- 우선 인권의식의 하위항목별 평균을 살펴보면,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3.16점, 인권 상황인식 3.20점, 인권 교육경험은 1.77회로 나타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인권상황에서 인권을 인식하는 편임. 최근 1년 동안 받은 인권교육은 평균 1.77회로 2회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신건강의 하위항목별 평균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1.97점, 우울 1.97점, 자아존중감 3.03점, 행복감 3.15점, 삶의 수준 7.00점으로 조사되었음. 스트레스와 우울은 평균이 2점 미만으로 연구참여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었음.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은 다소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으며 삶의 수준은 중간수준(5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 2.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

-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2>로 제시함
- 스트레스는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가 상인 집단(1.74)이 하인 집단(2.19)보다 덜 받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 $t=7.423, p<.001$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인권 상황인식과 인권 교육경험도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우울은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가 상인 집단(1.71)이 하인 집단(2.22)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t=-5.775, p<.001$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인권 교육경험도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우울 수준이 낮은 편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와 인권 상황인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가 상인 집단(3.27)이 하인 집단(2.79)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며( $t=8.129, p<.001$ ), 인권 상황인식에서 상인 집단(3.15)

이 하인 집단(2.90)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음( $t=3.927$ ,  $p<.001$ )

- 행복감은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와 인권 교육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가 상인 집단(3.40)이 하인 집단(2.91)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t=7.329$ ,  $p<.001$ ), 인권 교육경험이 상인 집단(3.25)이 하인 집단(3.08)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t=2.395$ ,  $p<.05$ ). 인권 상황인식은 상 집단(3.20)이 하인 집단(3.08)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삶의 수준은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인권 상황인식, 인권 교육경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상 집단(7.74)은 하 집단(6.28)보다 삶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고( $t=7.253$ ,  $p<.001$ ), 인권 상황인지도 상 집단(7.28)이 하 집단(6.59)보다 삶의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t=3.198$ ,  $p<.01$ ). 인권 교육경험을 더 많이 한 상 집단(7.37)은 하 집단(6.67)보다 삶의 수준이 높은 편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3.298$ ,  $p<.01$ )

<표 IV-2>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

(단위: 명, 점)

정신건강	인권의식		N	평균	표준 편차	t
스트레스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1	1.74	0.56	-7.423***
		하	196	2.19	0.64	
	인권 상황인식	상	229	1.91	0.64	-1.904
		하	158	2.04	0.64	
	인권 교육경험	상	181	1.90	0.68	-1.853
		하	205	2.02	0.60	
우울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0	1.71	0.83	-5.775***
		하	196	2.22	0.92	
	인권 상황인식	상	229	1.99	0.93	.363
		하	157	1.95	0.89	
	인권 교육경험	상	180	1.90	0.96	-1.371
		하	205	2.03	0.87	

자아존중감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1	3.27	0.55	8.129***
		하	196	2.79	0.62	
	인권 상황인식	상	206	3.15	0.64	3.927***
		하	181	2.90	0.60	
	인권 교육경험	상	181	3.09	0.62	1.817
		하	205	2.98	0.64	
행복감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88	3.40	0.64	7.329***
		하	196	2.91	0.67	
	인권 상황인식	상	228	3.20	0.70	1.631
		하	156	3.08	0.70	
	인권 교육경험	상	181	3.25	0.71	2.395*
		하	202	3.08	0.66	
삶의 수준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0	7.74	1.66	7.253***
		하	194	6.28	2.25	
	인권 상황인식	상	228	7.28	2.05	3.198**
		하	156	6.59	2.13	
	인권 교육경험	상	180	7.37	2.09	3.298**
		하	204	6.67	2.06	

주: \* $p<.05$  \*\* $p<.01$  \*\*\* $p<.001$

### 3.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생활경험

#### 1)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문화 및 학교생활만족도

□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의 문화와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3>으로 제시함. 학교의 문화와 학교생활만족도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항목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와 인권 상황인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가 상인 집단(3.41)이 하인 집단(2.92)보다 학교 친

구들에게 존중을 더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t=8.081, p<.001$ ), 인권 상황인지에서도 상 집단(3.24)이 하 집단(3.04)보다 학교 친구들에게 존중을 더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t=3.116, p<.01$ )

-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항목에서 인권의식 하위항목 3가지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가 상인 집단(3.59)이 하인 집단(3.05)보다 선생님에게 존중을 더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t=8.694, p<.001$ ), 인권 상황인지에서도 상 집단(3.44)이 하 집단(3.14)보다 선생님에게 존중을 더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t=4.444, p<.001$ ). 인권 교육경험의 횟수가 많은 상 집단(3.44)이 하 집단(3.20)보다 선생님에게 존중을 더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t=3.557, p<.001$ )
  
-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항목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와 인권 상황인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가 상인 집단(3.41)이 하인 집단(2.90)보다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더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t=6.874, p<.001$ ), 인권 상황인지에서도 상 집단(3.24)이 하 집단(3.03)보다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더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t=2.765, p<.01$ ). 인권 교육경험이 많은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선생님에게 공정한 대우를 더 받고 있다고 인지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항목에서는 인권 의식 하위항목 3가지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가 상인 집단(3.31)이 하인 집단(2.87)보다 학교생활이 더 즐겁다고 응답했고( $t=8.694, p<.001$ ), 인권 상황인지에서도 상 집단(3.18)이 하 집단(2.96)보다 학교생활이 더 즐겁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t=2.881, p<.01$ ). 인권 교육경험의 횟수가 많은 상 집단(3.19)이 하 집단(3.00)보다 학교생활이 더 즐겁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t=2.584, p<.05$ )

〈표 IV-3〉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문화 및 학교생활만족도

(단위: 명, 점)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인권의식		N	평균	표준 편차	t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1	3.41	0.60	8.081***
		하	196	2.92	0.58	
	인권 상황인식	상	229	3.24	0.65	3.116**
		하	158	3.04	0.60	
	인권 교육경험	상	181	3.19	0.66	.712
		하	205	3.14	0.6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1	3.59	0.55	8.694***
		하	196	3.05	0.65	
	인권 상황인식	상	229	3.44	0.63	4.444***
		하	158	3.14	0.67	
	인권 교육경험	상	181	3.44	0.63	3.557***
		하	205	3.20	0.68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1	3.41	0.73	6.874***
		하	196	2.90	0.73	
	인권 상황인식	상	229	3.24	0.76	2.765**
		하	158	3.03	0.78	
	인권 교육경험	상	181	3.23	0.77	1.833
		하	205	3.09	0.77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1	3.31	0.70	6.071***
		하	196	2.87	0.75	
	인권 상황인식	상	229	3.18	0.74	2.881**
		하	158	2.96	0.76	
	인권 교육경험	상	181	3.19	0.73	2.584*
		하	205	3.00	0.77	

주: \*  $p < .05$  \*\*  $p < .01$  \*\*\*  $p < .001$

## 2)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 교육목표 인식

-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 교육목표인식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4>로 제시함. 학교 교육목표의 인식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교육목표에 대해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인권 상황인식, 인권 교육경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음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에서 상 집단(3.30)은 하 집단(2.76)보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학교가 도움을 준다고 더 높게 인지하였음( $t=7.729, p<.001$ ). 인권 상황인지에서도 상 집단(3.10)이 하 집단(2.93)보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학교가 도움을 준다고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음( $t=2.169, p<.01$ ). 인권 교육경험의 횟수가 많은 상 집단(3.15)은 하 집단(2.92)보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학교가 도움을 준다고 더 높게 인지하고 있었음( $t=3.029, p<.01$ )
-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는 교육목표에 대해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인권 상황인식, 인권 교육경험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에서 상 집단(3.32)은 하 집단(2.80)보다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는 목표를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7.543, p<.001$ ). 인권 상황인지에서도 상 집단(3.15)이 하 집단(2.91)보다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는 목표를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3.236, p<.01$ ). 인권 교육경험의 횟수가 많은 상 집단(3.17)은 하 집단(2.95)보다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2.981, p<.01$ )
-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는 교육목표에 대해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인권 상황인식, 인권 교육경험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에서 상 집단(3.36)은 하 집단(2.87)보다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는 목표를 긍정적

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7.343$   $p<.001$ ). 인권 상황인지에서도 상 집단(3.22)이 하 집단(2.95)보다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3.895$ ,  $p<.001$ ). 인권 교육경험의 횟수가 많은 상 집단(3.19)은 하 집단(3.04)보다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2.199$ ,  $p<.05$ )

-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교육목표에 대해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인권 상황인식, 인권 교육경험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에서 상 집단(3.41)은 하 집단(2.95)보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6.642$ ,  $p<.001$ ). 인권 상황인지에서도 상 집단(3.27)이 하 집단(3.04)보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3.895$ ,  $p<.01$ ). 인권 교육경험의 횟수가 많은 상 집단(3.27)은 하 집단(3.10)보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t=2.355$ ,  $p<.05$ )

〈표 IV-4〉 인권의식에 따른 학교 교육목표 인식 정도

(단위: 명, 점)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인권의식		N	평균	표준편차	t
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1	3.30	0.67	7.729***
		하	196	2.76	0.71	
	인권 상황인식	상	229	3.10	0.77	2.169*
		하	158	2.93	0.70	
	인권 교육경험	상	181	3.15	0.73	3.029**
		하	205	2.92	0.74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1	3.32	0.66	7.543***
		하	196	2.80	0.71	
	인권 상황인식	상	229	3.15	0.71	3.236**
		하	158	2.91	0.74	

	인권 교육경험	상	181	3.17	0.74	2.981**
		하	205	2.95	0.71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1	3.36	0.64	7.343***
		하	196	2.87	0.66	
	인권 상황인식	상	229	3.22	0.68	3.895***
		하	158	2.95	0.68	
	인권 교육경험	상	181	3.19	0.69	2.199*
		하	205	3.04	0.68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상	190	3.41	0.66	6.642***
		하	195	2.95	0.68	
	인권 상황인식	상	228	3.27	0.69	3.895**
		하	157	3.04	0.70	
	인권 교육경험	상	180	3.27	0.71	2.355*
		하	204	3.10	0.69	

주: \*  $p < .05$  \*\*  $p < .01$  \*\*\*  $p < .001$

## 4. 청소년의 인권 관련 정보 인지도

### 1) 학교급별 인권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충청북도 청소년들이 인권 관련 협약과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는 <표 IV-5>, <표 IV-6>, <표 IV-7>로 제시함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충북의 청소년은 40.6%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경우는 47.0%,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4%로 조사됨. 학교급별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38.3%, 중학교 44.9%, 일반고 42.6%, 특성화고 36.0%로 나타남.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47.4%, 중학교 51.7%, 일반고 38.3%, 특성화

고 54.0%였으며,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14.3%, 중학교 3.4%, 일반고 19.1%, 특성화고 10.0%로 나타났음

- 전국과 충북을 비교해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는 전국보다 충북의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는 전국보다 충북이 더 높게 나타났음.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알고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일반고에서 전국보다 충북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중학교와 특성화고에서는 전국에 비해 충북이 낮은 비율을 보였음

<표 IV-5> 학교급별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도

구분	학교급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른다	명	1685	59	1270	40	930	40	203	18	4291	157
		%	44.5	38.3	33.7	44.9	39.7	42.6	35.8	36.0	38.6	40.6
	이름만 들어봤다	명	1593	73	1860	46	1094	36	285	27	5144	182
		%	42.0	47.4	49.4	51.7	46.7	38.3	50.3	54.0	46.3	47.0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안다	명	511	22	638	3	321	18	79	5	1676	48
		%	13.5	14.3	16.9	3.4	13.7	19.1	13.9	10.0	15.1	12.4
	합계	명	3789	154	3768	89	2345	94	567	50	11107	38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전국합계-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를 포함함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충북의 청소년은 60.5%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경우는 35.1%,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로 조사되었음. 학교급별로 학생인권조례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63.0%, 중학교 68.5%, 일반고 52.1%, 특성화고 54.0%로 나타남.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31.8%, 중학교 30.3%, 일반고 40.4%, 특성화고 44.0%였으며,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

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5.2%, 중학교 1.1%, 일반고 7.4%, 특성화고 2.0%로 나타남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에서 전국보다 충북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전국보다 충북이 낮은 비율을 보였음

<표 IV-6> 학교급별 학생인권조례 인지도

구분	학교급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학생 인 권 조 례	모른다	명	2245	97	2101	61	998	49	259	27	5822	234
		%	59.3	63	55.8	68.5	42.6	52.1	45.7	54.0	52.4	60.5
	이름만 들어봤다	명	1352	49	1451	27	1065	38	274	22	4452	136
		%	35.7	31.8	38.5	30.3	45.4	40.4	48.3	44.0	40.1	35.1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 인지도 안다	명	189	8	216	1	281	7	34	1	833	17
		%	5	5.2	5.7	1.1	12	7.4	6	2.0	7.5	4.4
	합계	명	3786	154	3768	89	2344	94	567	50	11107	38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전국합계-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를 포함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충북의 청소년은 27.9%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경우는 59.4%,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7%로 조사되었음. 학교급별로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32.5%, 중학교 27.0%, 일반고 25.5%, 특성화고 20.0%로 나타남. 이름만 들어봤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59.1%, 중학교 59.6%, 일반고 52.1%, 특성화고 74.0%였으며,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8.4%, 중학교 13.5%, 일반고 22.3%, 특성화고 6.0%로 나타났음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고에서 전국보다 중복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고는 전국보다 중복이 낮은 비율을 보였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고에서 전국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음

<표 IV-7> 학교급별 국가인권위원회 인지도

구분	학교급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국가 인권 위원회	모른다	명	1440	50	1097	24	577	24	167	10	3408	108
		%	38.0	32.5	29.1	27.0	24.6	25.5	29.5	20.0	30.7	27.9
	이름만 들어봤다	명	1931	91	2042	53	1292	49	340	37	5976	230
		%	51.0	59.1	54.2	59.6	55.2	52.1	60.0	74.0	53.8	59.4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 인지도 안다	명	416	13	630	12	473	21	60	3	1723	49
		%	11.0	8.4	16.7	13.5	20.2	22.3	10.6	6.0	15.5	12.7
	합계	명	3787	154	3769	89	2342	94	567	50	11107	38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전국합계-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를 포함함

## 2) 학교급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 충청북도 청소년들에게 인권관련 정보를 얼마나 제공받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는 <표 IV-8>로 제시함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충북의 청소년은 81.4%가 아니라고 응답하였고,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18.6%로 조사됨. 학교급별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서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77.3%, 중학교 89.9%, 일반고 84.0%, 특성화고 74.0%로 나타났고,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22.7%, 중학교 10.1%, 일반고 16.0%, 특성화고 26.0%로 나타났음
- 전국과 충북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에서 전국보다 충북의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났음

<표 IV-8> 학교급별 청소년용 정책홍보 및 정보 제공

구분			학교급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음	아니다	명	2830	119	2961	80	1930	79	471	37	8674	315
		%	75.3	77.3	78.9	89.9	82.3	84.0	83.2	74.0	78.4	81.4
	그렇다	명	930	35	792	9	415	15	95	13	2389	72
		%	24.7	22.7	21.1	10.1	17.7	16.0	16.8	26.0	21.6	18.6
	합계	명	3760	154	3753	89	2345	94	566	50	11063	38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충북의 청소년은 87.1%가 아니더라고 응답하였고,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12.9%로 조사되었음. 학교급별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서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81.2%, 중학교 99.4%, 일반고 86.2%, 특성화고 94.0%로 나타났고,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18.8%, 중학교 5.6%, 일반고 13.8%, 특성화고 6.0%로 나타났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고를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고에서 전국보다 충북의 응답비율이 낮은 비율을 보였음

〈표 IV-9〉 학교급별 유엔아동권리 협약 내용 등 정보제공

구분			학교급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전국	충북
유엔아동권리 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음	아니다	명	2940	125	3148	84	2058	81	497	47	9147	337
		%	78.2	81.2	83.9	94.4	87.8	86.2	87.8	94.0	82.7	87.1
	그렇다	명	819	29	605	5	285	13	69	3	1913	50
		%	21.8	18.8	16.1	5.6	12.2	13.8	12.2	6.0	17.3	12.9
	합계	명	3759	154	3753	89	2343	94	566	50	11060	38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충북의 청소년은 74.2%가 아니더라고 응답하였고,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25.8%로 조사됨. 학교급별로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

에 대해서 아니다로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71.4%, 중학교 87.6%, 일반고 66.0%, 특성화고 74.0%로 나타났고,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는 초등학교 28.6%, 중학교 12.4%, 일반고 34.0%, 특성화고 26.0%로 나타났음

-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 전국보다 층북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국보다 층북이 낮은 비율을 보였음

<표 IV-10> 학교급별 인권침해관련 정보 제공

구분			학교급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전국	층북	전국	층북	전국	층북	전국	층북	전국	층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아니다	명	2454	110	2955	78	1752	62	465	37	8042	287
		%	65.3	71.4	78.8	87.6	74.8	66.0	82.2	74.0	72.8	74.2
	그렇다	명	1304	44	793	11	589	32	101	13	3009	100
		%	34.7	28.6	21.2	12.4	25.2	34.0	17.8	26.0	27.2	25.8
	합계	명	3758	154	3748	89	2341	94	566	50	11051	387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 1. 결론

- 인권은 개인의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하게 주어지는 기본적 권리로 타인이 함부로 빼앗거나 침해할 수 없는 개인 고유의 권리임. 그러나 아동에게는 수 세기 동안 예외로 적용되었고, 아동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도 봄. 이러한 시류는 제1대 세계대전이후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변화되었고, 아동권리선언문, 제네바 아동권리 선언문 등이 작성됨. 이에 한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권리보호의 인식이 상향되고 있으나 아직은 교육현장과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청소년기 인권에 대한 인식은 타인에 대한 존엄의식에 영향을 주게 되어 학교 내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성인기 대인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기 인권교육은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만족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 및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충북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충북의 청소년 인구(10~19세)는 2019년 현재 약 155천명으로 충북 총 인구의 9.7%정도 임. 남자청소년은 80,738명, 여자청소년은 74,098명임
  -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중심으로 충북 청소년의 정신건강현황(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충북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1.8%로 전국 40.4%에 비해 다소 높았고, 우울감 경험률은 26.2%로 전국 27.1%에 비해 다소 낮았음
  - 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은 2013년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및 실천규약」을 2016년

에 제정함

- 본 연구는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 가운데 충청북도의 자료를 활용함
- 연구참여자수는 387명으로 남학생 143명(37%), 여학생 244명(63%), 학교급으로 초등학교 154명(39.8%), 중학교 89명(23.0%), 일반고등학교 94명, 특성화고등학교 50명(12.9%)이 포함됨
- 연구에 포함된 변인은 독립변수인 인권의식, 종속변수인 정신건강, 삶의 수준, 인권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정도 변인임. 인권의식은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 인권 상황 의식, 인권교육 경험으로 구성하고, 정신건강은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행복감, 삶의 수준으로 구성하고, 학교생활경험은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로 구성함
  
- 인권의식에 따라서 정신건강은 차이를 보였음
- 자신의 인권존중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우울 수준이 적고, 자아존중감, 행복감, 삶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인권 상황인식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삶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인권 교육경험이 적은 청소년들보다 많은 청소년들은 행복감과 삶의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인권의식에 따라서 학교문화 및 학교생활만족도는 차이를 보였음
- 자신의 인권존중과 인권 상황인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낮은 청소년들보다 학교 친구들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많이 받고,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학교에 만족하는 편임
- 인권 교육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적은 청소년들보다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하고 학교에 더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남
  
- 인권의식에 따라서 학교 교육목표 인식은 차이를 보임. 자신의 인권 존중정도가 높고, 인권 상황인식이 높으며, 인권 교육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학교의 교육목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

는 편임. 다시 말해 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며,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목표에 대해 인권의식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높은 청소년들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충북 청소년들의 인권 협약과 기관 인지도 정도는 낮은 편임
- 인권 협약과 기관 인지도 질문에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모른다’ 응답률을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40.6%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60.5%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7.9%가 모른다고 응답함
  
- 전국과 비교할 때 충북 청소년들의 인권 협약과 기관인지도는 낮은 편임
-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해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 안다고 응답한 학생비율은 중학교가 3.4%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14.3%, 특성화고 10.0%, 일반고 19.1%로 나타남
-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 안다고 응답한 학생비율은 중학교가 1.1%로 가장 낮고, 초등학교 5.2%, 일반고 7.4%, 특성화고 2.0%로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곳)인지 안다고 응답한 학생비율은 특성화고가 6.0%로 가장 낮고, 초등학교 8.4%, 중학교 13.5%, 일반고 22.3%로 나타남
  
- 인권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는 낮은 편임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충북 청소년 81.4%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충북 청소년 87.1%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충북 청소년 74.2%가 아니더라고 응답함
  
- 전국과 비교할 때 충북 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은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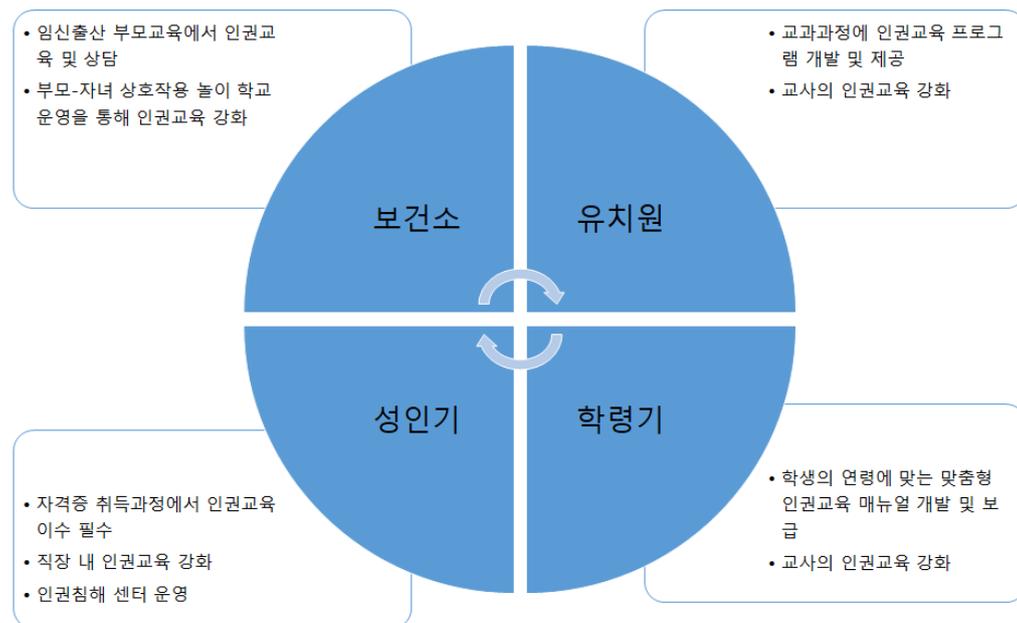
-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89.9%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77.3%, 일반고 84.0%, 특성화고 74.0%로 나타남
-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99.4%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81.2%, 일반고 86.2%, 특성화고 94.0%로 나타남
-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의 문항에 대해 아니다로 응답한 비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87.6%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71.4%, 일반고 66.0%, 특성화고 74.0%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인권의식(자신의 인권존중, 인권 상황인식, 인권 교육경험)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권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정신건강 즉 스트레스와 우울은 낮은 점수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삶의 수준은 높은 점수를 보였음. 인권의식이 높은 청소년이 높은 결과보임
- 학교문화 및 학교생활만족도와 학교 교육목표에 대해서도 인권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보다 더 긍정적인 점수를 보임
  
- 충북 청소년들에게 인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한 수준은 낮으며, 이는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이 비미하다고 볼 수 있음.
- 전국과 비교할 때 충북은 인권 협약과 기관인지도,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서 낮은 편임
- 충북 내에서도 중학교는 다른 학교급보다 더 낮은 인권 협약과 기관인지도,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을 보임

## 2. 제언

□ 학교폭력은 비단 오늘의 문제는 아님. 1990년대 후반 한 청소년의 자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고, 그 이후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왕따와 차별, 폭력 등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음. 더욱이 집단 따돌림이나 차별, 학교내 폭력은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면서 자살에 이르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을수록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됨. 따라서 청소년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 인권의식은 특정시기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의 경험이 지속되면서 타인과 관계 속에서 학습하게 됨. 따라서 영유아기 부모교육에서 인권교육은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함. 이에, 임신과 출산 준비 과정부터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V-1] 생애주기별 인권교육

□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은 많은 논쟁을 불러오고 있음.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아동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은 미약한 것이 현실임.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청소년기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기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볼 때, 청소년기 인권의식 함양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들의 권리보장을 넘어 타인의 권리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봄

○ 서울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6조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은 인권의 주체이며,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음. 이는 타인으로부터 청소년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인권도 보호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임.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충청북도 아동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배포하여 청소년기 건강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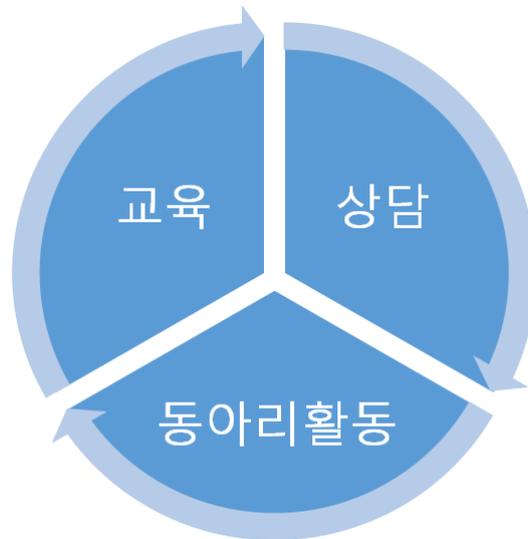
□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 설립·운영

○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의 보호권과 건강권, 인권 및 참여권을 보장하고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아동의 삶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강화를 비롯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지원강화, 마음건강 돌봄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 청소년기는 가족보다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기임. 때문에 준거집단의 소속감이 낮은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여기에 한국사회 청소년들은 대학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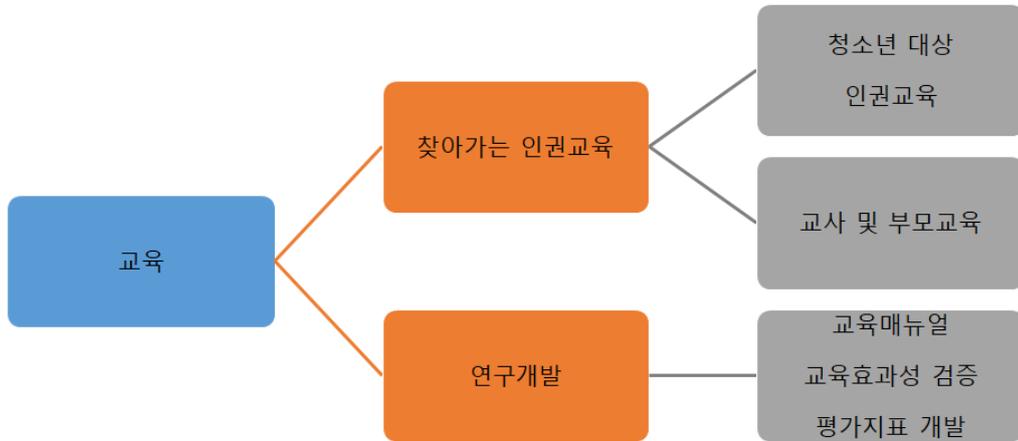
학이라는 커다란 벽을 앞에 두고 있음. 이 중 어느 하나가 중심을 잃을 경우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됨. 최근 성적 문제, 또래집단의 폭력이나 갈등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 문제는 그들이 처한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줌. 따라서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는 상담과 찾아가는 인권교육, 유치원부터 중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인권교육매뉴얼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인권 지키미 동아리 활동모집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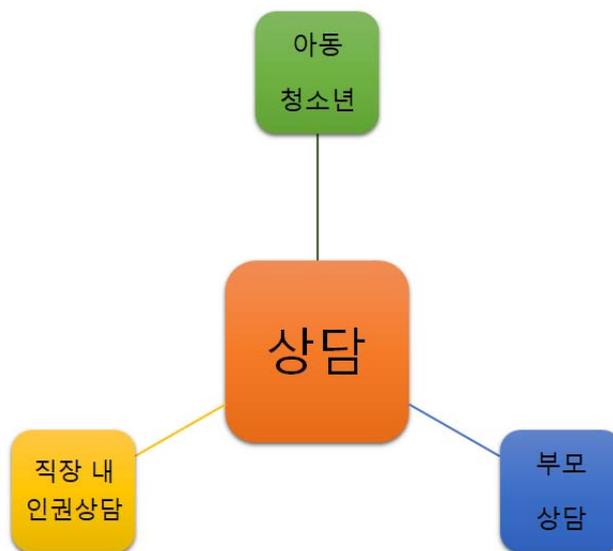
[그림 V-2]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 기능

- 그 중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과 연구개발팀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교육지원팀은 현장에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교육과 연구는 별도의 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V-3]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 교육기능

- 상담은 아동 청소년과 부모, 직장내 인권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이지만, 부모와 학교 교사의 인권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청소년 인권교육이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등을 포함하여 상담이 진행되어야 함. 상담은 1:1 개인 상담에서 집단 상담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함



[그림 V-4]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센터 상담 기능

참고문헌 및 부록



## 참고문헌

- 행정안전부(2019). 2019년 주민등록인구 현황.
- 통계청(2019).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2019). 교육통계.
- 보건복지부(2018).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8). 제 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2016).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재 개발 연구.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2007).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 충청북도교육청(2019).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현장 리플릿.

## 부록

### 충청북도교육공동체 헌장

#### Chapter01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교육공동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밑거름이며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의 초석이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밝혀 민주적인 학교문화 실현의 지표로 삼는다.

-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 학생은 안전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가치 있는 삶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배움에 힘써야 한다.
-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는 교권을 존중하고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한다.
- 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교직원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부모를 존중하며 가르침에 힘써야 한다.

#### Chapter02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 실천규약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실천규약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및 실천규약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약속으로서,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정신과 내용을 반영하고, ‘함께 행복한충북교육’의 비전을 담아 제정되었으며,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규칙(이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등의 기본 규범으로 활용한다.

헌장 및 실천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법적 후견인, 그 밖의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교육공동체’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주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말한다.

##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조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6조 학생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학생은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학생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은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학생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생은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4.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 제2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제15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학부모는 신상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자녀의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동참해야 한다.
2.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학부모는 교권과 학습권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4.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제22조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 평가 등 교육활동에 관한 자율권을 갖는다.

제24조 교원은 교육 연구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

제26조 교직원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교직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교직원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교직원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교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는 신분상의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1조 교직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교직원은 교육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원은 충실한 교수·학습 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지속적인 교육활동 및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교직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4. 교직원은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Chapter03

### 실천규약 조항별 해설 및 적용방향

####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1조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다.

학생은 누구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학교 체육부의 경기에 원하지 않는 학생을 강제

로 응원단으로 참여하게 할 수 없으며,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없다.

학교는 현장실습 및 체험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예·체능 특기자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적용방향>

- ❖ 모든 학생의 학습권 균등 보장
  - 현장실습 및 체험과정에서 안전과 학습권 보장
  - 예·체능 특기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습권 보장
  -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 환경 조성
- ❖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는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
  - 단,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긴급한 경우 제외

제2조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2조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충청북도의회 2015. 12. 1.)”에 근거한 것으로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학생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방과후학교 수업(특히 교과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의 진로 계발에 필요할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수는 있으나,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적용방향>

- ❖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
  - 방과후 교육활동 및 야간자율학습 시 학생 선택권 보장

- ❖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운영: 학생의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 ❖ 0교시 수업 전면 금지
- ❖ 학교 구성원 협의를 통해 자율학습 시간 자율적 결정
  - 고등학교 22:00까지 운영(고 3학년은 학생, 학부모 요구 시 23: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보충수업 금지 (희망 학생에 한하여 학교 시설 개방)

제3조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3조는 복장, 두발 등 학생의 개성 표현과 관련된 조항이다.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주체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두발이나 복장과 관련한 기준은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과 협의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용방향>

- ❖ 학교는 학생이 외모를 통해 개성을 표현할 권리 보장
- 다만, 두발의 형태, 용모 및 복장에 관한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석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및 개정
- ❖ 여학생의 교복 하의 치마와 바지 선택권 보장
- ❖ 학생 선도 차원의 강제 이발 금지
- ❖ 고정식 또는 탈부착식 명찰 선택권 보장

제4조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4조는 학생의 평등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것이다. 이 법 규범들에서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은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자,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러한 법원칙에 근거하여 학생들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들은 그러한 차별에 시정을 요구하여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인종, 신분, 국가, 민족, 지역, 언어, 장애, 용모,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교과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차별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학교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성적 이상의 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차별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적용방향>

- ❖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차별행위 금지
- ❖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 ❖ 모든 학생에게 소속 학교 교육시설의 균등한 사용 기회 제공 권장
- ❖ 장애학생 차별 금지

제5조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해설>

제5조는 학생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다.

「헌법」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이란 학생의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조항에서는 학생이 특정한 생각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양심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 학생들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교육적 지도는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비교육적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종교 재단이 설립한 학교에서는 학생이 요구할 경우 종교 과목을 대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는 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종교 과목 수업이

나 종교교육에 관해서는 학생들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적용방향>

- ❖ 종립(宗立)학교의 종교교과 운영: 대체 과목 운영
- ❖ 종립학교의 종교행사: 학생 참여 선택권 보장

제6조 학생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6조는 학생의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폭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남긴다. 학생은 이와 같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당연히 갖고 있지만, 수많은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조항은 학생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고, 학생을 위와 같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체벌 대신 학생의 잘못을 일깨우는 회복적 생활교육, 민주적 인권의식 함양 교육,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을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체벌을 금지하여 교육현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교폭력을 철저히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와 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는 성폭력에 대해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구호기관, 시민단체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학생을 긴급 구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용방향>

- ❖ 학교에서의 직·간접적인 체벌 금지

- 체벌로 도구나 신체 등을 사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 학생들끼리 신체적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
- 학생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 ❖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계획 수립·운영
- ❖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발생: 학교폭력처리 매뉴얼 준수
- ❖ 학교 운동선수 훈련 시 체벌 금지

제7조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7조는 학생의 의사표현과 관련된 조항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자유를 말한다. 교육의 목표가 민주시민 양성이므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공동체의식과 글로벌 시민의식, 지구촌 문제 해결에 관한 안목과 참여 같은 민주시민 역량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들의 단체 활동은 목적과 과정이 법률과 도덕에 반하지 않은 교육적인 것이

어야 하며, 조직폭력 및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학칙 등을 통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 <적용방향>

- ❖ 학생의 의사표현 자유 보장
  - SNS 및 홈페이지에 의견 제시
  - 교육적으로 필요한 표현활동, 설문조사 등 참여 보장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교육적인 행위는 제한
- ❖ 학생의 교육적 단체 활동 참여권 보장

제8조 학생은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8조는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다.

자치활동의 권리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근거하며, 학생회, 동아

리, 소모임 등 학생 자치활동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이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간섭에 놓여 있지 않은지 살피고, 학생의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 자치조직의 피선거권을 성적 등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되고, 학생 자치조직의 대표는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자율과 자치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조직은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행사를 개최할 권리가 있다. 학생 대표기구인 학생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 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 <적용방향>

- ❖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권리 보장
- ❖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보장, 예산·공간 확보 등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 ❖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 각종 학교행사 시 학생 의견 수렴
- ❖ 학생주도의 학생축제 기획·운영 권장
- ❖ 자율적인 주제 선정 및 회의·토론의 정례화
- ❖ 자율적인 토론 및 의결과 이를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
- ❖ 회의록 작성 및 민주적인 회의 진행법 지도

제9조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9조는 학생의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적용될 규범인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적으로도 ‘학생에 대한 보살핌은 학생의 자기결정과 참여를 동반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학생의 참여 보장은 학생 인권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실효적인 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의 목적이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시민의 육성에 있음에 유념하면서, 학생의 미성숙과 같은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학생 참여권을 제한하기보다 참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이는 학생이 학생회 등 자치 조직을 통해 학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칙은 학교 내 자치 규범으로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생 대표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자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대한 학생의 제·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적용방향>

##### ❖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및 공개

● 민주적·합리적 절차를 거쳐 학생 의견 수렴(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설치,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정례적인 학생대표와의 만남,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개진 등)

- 학생 대표 및 희망하는 일반학생 참여 권장
- 학생 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 보장
- 학교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장소에 게시·안내
- 학기 초 학생과 학부모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

제10조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해설>

제10조는 학생의 사생활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다.

학생의 사생활 보장은 자아의 독립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사생활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학교는 사생활 보장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교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 일기와 개인 수첩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강제 열람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MP3,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는 현대사회에서 통신, 보호, 여가, 학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

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들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은 교사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규칙을 어긴 경우라도 학생의 생활 존중,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가급적 당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적용방향>

- ❖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 지양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제외
- ❖ 학생의 개인 일기, 개인 수첩 등 사적인 기록물은 강제 열람 금지
  - 단,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포함된 일기 쓰기 지도 가능
- ❖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명시
  - 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11조 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11조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다.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 본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때 학생 본인의 동의는 각각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에는 학생 본인과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 또한 제공하게 될 학생 정보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적용방향>

- ❖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처리·관리: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 준수
- ❖ 학생의 교육비 미납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타인에게 제공 불가
-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 부정확하거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 ❖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열람 가능

제12조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12조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추락, 미끄러짐, 전기 등의 안전시설 점검, 교내 과속 방지 시설 설치, 체육시설·놀이기구 등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하교 시간에 공사 차량이나 외부 차량 출입제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는 일반교실과 실험실습실의 시설·설비가 안전하게 설치되도록 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을 이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게 충분한 영양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하여 학습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각종 소음, 분진, 악취, 불량식품, 교통사고 및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적절한 냉·난방 관리 및 녹지 공간 확대 등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에 힘써야 한다.

#### <적용방향>

- ❖ 학교는 모든 교육활동에 앞서 안전교육 실시
- ❖ 학교는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
- ❖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 ❖ 학교는 학생들의 양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
-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 각종 소음, 악취, 불량식품, 교통사고 및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학생 보

호

제13조 학생은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13조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과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는 수업 등으로 학생이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학생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결과·조퇴·결석 시 여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생리통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배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질병 등 건강상태를 미리 교사에게 알려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업에 임하도록 한다.

<적용방향>

- ❖ 생리로 인해 결석이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 금지 (월 1일에 한해 출석인정)
- ❖ 적절한 보건 시설 및 물품 확보
- ❖ 보건담당 교사 지정 및 업무 수행

제14조 학생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은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학생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학생은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4.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구성에 힘써야 한다.

학생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해설>

제14조는 행복한 학교문화 구성을 위한 학생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다.

제1호는 학생이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학칙은 학교 질서유지의 최소한의 규범이다. 따라서 교육공동체 간에 합의된 학칙 및 학교생활 규정 준수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제2호는 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안전한 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 학교는 다른 학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며, 미래 학생들도 함께 사용해야 하는 배움터이기 때문이다.

제3호는 학생이 학교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4호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실천이다.

#### <적용방향>

- ❖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합의하여 만든 학칙 및 학교 생활 규정 준수
- ❖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시설을 소중하게 사용
- ❖ 교육활동에 적극적·능동적으로 참여

### 제2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제15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15조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교육기본법」에서도 학부모는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활동의 필요에 따라 진로 관련 교육, 교육활동 협력교사, 놀이지도 보조교사 등 재능에 따라 교육기부 방식 등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별 실정에 따라 학부모가 학교 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가정과 학교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적용방향>

- ❖ 가정과 학교의 소통 기회 확대

- ❖ 학부모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 학부모의 학교 행사 및 교육기부 참여 기회 확대
- ❖ 학부모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 참여 기회 확대

제16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설>

제16조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권 중 의견 제시와 관련된 조항이다.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의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단, 이 권리는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기명설문, 의견 제시, 이의 제기, 시정 요구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학교교육과 관련 없는 음해성 민원이나 무고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적용방향>

- ❖ 학부모의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관련 의견 제시 보장
  - 학교 홈페이지, 전화, 설문지, 면담 등
- ❖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견 제시
- ❖ 학교교육계획 및 각종 학교행사 활동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 ❖ 학교와 학부모는 토론회, 간담회 등 상호 소통을 위한 노력 확대

제17조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 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17조는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권 중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요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학부모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적용방향>

- ❖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요구하는 학부모 의견 수렴
  -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수렴
  -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시설(물)의 위험 요소 개선 요구 수렴
  - 안전하고 균형 잡힌 학교급식 요구 수렴
  - 계절별 자연재해(황사, 미세먼지, 한파, 빙판길 낙상 등) 대비 안전교육 실시

제18조 학부모는 신상에 대한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18조는 학부모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개인정보도 보호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교육활동의 필요에 의해 학교에서 수집·활용하고 있는 학부모의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의견 제시, 이의 제기, 시정 요구 시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없도록 해야 한다.

<적용방향>

- ❖ 학부모의 개인정보 수집·처리·관리 시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 준수
- ❖ 본인 동의 없이 학부모의 개인정보 공개 및 타인에게 제공 불가
- ❖ 학교장 및 교직원 등 자신에게 보유하고 있는 학부모에 관한 개인 정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부모

#### 모의 개인정보 보호

- 부정확하거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 그 내용이 학부모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 ❖ 학부모의 의견 제시 및 처리 방법 개선
  -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실명으로 작성된 의견에 한해 정식 접수. 단, 이 경우도 학생 및 학부모의 인적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장
  - 온라인 의견 제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없이 정확하고 솔직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스템 개선
  -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의견 제시, 이의 제기, 시정 요구 시 학부모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 조성
  - 쌍방향 소통의 기회 제공

제19조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19조는 학부모의 상담 요청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 경우 학교나 교원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관련 상담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상담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적용방향>

- ❖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학교방문, 수업공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조사 시기 등과 연계하여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학부모가 편리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상담 시간 조정
- ❖ 담임교사와의 면담 요청
  - 자녀 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관련 담임교사와의 면담 실시
  - SNS, 학급 홈페이지, 간단한 메모, 알림장 등을 통한 소통 권장
  - 사전 면담 신청 권장

제20조 학부모는 학교 운영 및 자녀의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20조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중 학생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 학교는 학교 운영 및 학생의 교육활동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성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적용방향>

- ❖ 학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운영
- ❖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 운영
- ❖ 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NEIS 학부모 서비스) 제공
- ❖ 가정통신문, SN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제21조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동참해야 한다.
2.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3. 학부모는 교권과 학습권의 보호에 힘써야 한다.
4. 학부모는 교원에게 자녀에 대한 유무형의 특별대우를 요구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제21조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 조항의 1, 2, 3호는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의 권리와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자녀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기본법 제13조 1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의 4호는 학생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부모가 학교에 대한 협조나 봉사 등을 이유로 자녀에 대해 특별한 유무형의 대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

부모는 학생이 학생회 임원이거나 학부모가 학부모회 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이유로 교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주선해서는 아니 된다.

<적용방향>

- ❖ 학부모의 자녀교육 동참
- ❖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 ❖ 학부모의 교권·학습권 보호 책임 준수
- ❖ 학부모의 청렴교육 참여

제3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제22조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22조는 교원이 자주성·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교원의 본질적인 권리임을 밝히며, 교육에 대한 자주·독립권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서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모든 교육구성원은 교원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을 간섭 또는 방해받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교원은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용방향>

- ❖ 학교·학년·학급 수준의 교육과정 수립
- ❖ 학생의 수업태도 및 학칙준수를 지도할 권리
- ❖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제23조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 평가 등 교육활동에 관한 자율권을 갖는다.

<해설>

제23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자율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역 실정 및 학교 상태에 맞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육내용 선택, 교육방법 결정, 교육평가 실시 등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교육활동에 관한 자율권은 제22조 교원의 ‘자주성·전문성’과 연계된 것이다. 이는 교원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관리자, 학부모,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 <적용방향>

##### ❖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운영

- 교육과정 목표 및 교과교육 목표의 재설정
- 법적 이수 범위 내에서의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결정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재구성
- 학년군별 이수 교과(편재)의 결정 및 시수의 증감(시간 배당)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활동·시간의 편성과 운영

##### ❖ 교수·학습 및 평가의 재량

- 교수·학습: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근거한 교과교육과정의 재구성·단원과 차시의 재구성, 교과통합 및 연계, 교수·학습 활동 전개 방법, 체험학습 전개 등
- 교과평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수립 및 이에 근거한 평가 실시 (평가의 목표·내용·방법 및 보존, 평가의 실시 시기 및 횟수 등)

##### ❖ 교재의 선택과 활용

- 국정교과서가 없는 교과에 대한 검·인정 교과용도서의 선정·사용
- 학습 자료의 자율적 선별과 활용

제24조 교원은 교육 연구 및 연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24조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다.

교원은 연구자로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교원이 교육 연구 및 연수과정에서 산출한 다양한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향상에 관한 권고」 제6장 ‘교원의 계속교육’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현직교육은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와 향상에 매

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는 교원의 각종 연수 및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출된 연구물의 저작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적용방향>

- ❖ 각종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지원
  - 연수 종류: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 연수 방법: 연수기관, 학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등
  - 연수 경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예산 편성 권장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자율연수에 대한 연수경비를 학교예산으로 지원
- ❖ 전문성 신장을 위한 현장중심 공동체 학습활동 지원
-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원연수 실시

제25조 교직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25조는 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민주적·협력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전체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직원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교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적용방향>

- ❖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참여
  - 교직원협의회 참여
  - 학교교육과정 운영 협의회·연수 참석
  - 학교교육과정 운영 평가·학교만족도조사 등 설문 참여
  - 교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운영
- ❖ 학교교육과정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참여
  -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 편성·기획: 학교교육과정위원회
  - 추진·운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평가위원회, 부장교사협의회, 학년·교과협의회, 업무부서별협의회 등

제26조 교직원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26조는 교직원의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다.

이는 교직원의 교육활동 운영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직원은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교직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직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용방향>

- ❖ 교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학부모 상담·민원 절차의 적극적 안내와 홍보
  - 학생생활지도방법,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교생활규정에 반영
  - 교권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연수 실시
- 대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위원, 교원, 학부모, 학생
- 내용: 교권침해 사례를 통한 교권침해 대응 방법 및 예방교육
- ❖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충청북도교권보호매뉴얼 및 단위학교 교권보호규정에 의거
- ❖ 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교직원 업무수행상의 고충 해결
- ❖ 충청북도교육청 법률지원단 법률 상담 이용

제27조 교직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각종 단체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27조는 교직원의 다양한 단체 조직·참여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교직원이 전문성 계발과 지위 향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해 교직원 단체, 교과 연구회, 동호회 등 각종 전문적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직원이 스스로 전문성을 기르고 지위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

의 범위 내에서 교섭·협의권을 가진다.

<적용방향>

- ❖ 전문성 및 자기계발을 위한 단체 조직과 참여
- ❖ 교직원 지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단체 조직과 교섭·협의활동 보장
- ❖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허용

제28조 교직원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28조는 교직원의 건강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교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각종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다. 교직원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발달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는 교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 업무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제한해야 한다. 또한 교직원의 편의와 휴식을 위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적용방향>

- ❖ 교직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 탈의실, 휴게실, 협의회실 설치 등
- ❖ 휴일 등 근무시간 외 자발적 동의 없는 업무지시 지양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2015.10.28.)」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3·4·5항과 제4·5조에 의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시간외근무 제외
- ❖ 합당한 사유의 휴식제도 이용 보장

제29조 교직원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29조는 교직원의 평등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인 평등권과 관련된 것으로, 교직원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교직원은 나이, 성별, 종교, 인종, 또는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의 가입과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적용방향>

##### ❖ 고충심사제도를 통한 교직원의 권리 보호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및 인사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여건상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제30조 교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는 신분상의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해설>

제30조는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직원은 학교교육의 직·간접적 담당자로서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며,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관련 법규에 규정된 권한과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이는 교직원의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교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명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청원권 행사 등 적법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행사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적용방향>

##### ❖ 소청심사청구제도를 통한 신분 보장

교원소청제도는 직접적으로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교원의 권리구제, 즉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로도 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제31조 교직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제31조는 교직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조항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사생활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의미도 폭넓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교직원 또한 근무관계 이외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교직원 개인의 병력, 종교, 전화번호, 각종 이력이나 경력,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교직원이 소속된 단체 등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교직원에게 관한 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적용방향>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실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계획의 수립
  - 개인정보 보관 및 관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암호화 등 보안 강화
  -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등
- ❖ 교직원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누설 금지

제32조 교직원은 교육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원은 충실한 교수·학습 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지속적인 교육활동 및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교직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과 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교직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4. 교직원은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설>

제32조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다.

- 1호는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기계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2호는 학생의 인성함양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3호와 4호는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는 교직원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직원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투영되어 학습된

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행위는 교육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이어야 한다. 또한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적용방향>

- ❖ 연수 및 연구 활동 참여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계발
  - 각종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실시
  - 대학원 수강 및 전문단체·동아리를 통한 연구 활동 참여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성교육진흥법·진로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제고 등
- ❖ 학생 보호·감독 의무 준수
- ❖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
  - 교육기본법 제5조 및 13조에 근거,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시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의 적극 반영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가능한 시간대를 조사하여 행사 추진
- ❖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의무 준수

2019 충북사회복지 조사연구  
충청북도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따른 정신건강 및 학교생활 만족

---

- 인 쇄 일 : 2019년 12월 00일
  - 발 행 일 : 2019년 12월 00일
  - 발 행 인 : 김 영 석
  - 발 행 처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 전화/팩스 : T. 043)234-0840 F. 043)234-0849
  - 홈페이지 : [www.cwin.or.kr](http://www.cwin.or.kr)
- \* 판권소유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 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가 불가능함
- 





